

임시허가 신청서

※ 어두운 란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이름(회사명)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
	주소		
	대표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	명칭		
	유형	☐ 신제품인 경우 ☐ 서비스인 경우 ☐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	
	주요내용		
신청사유	☐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맞는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		
	☐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		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6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			
산업통상부장관 귀하			
붙임 서류	1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가.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나.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다.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라.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마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.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.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가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.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.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. 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 및 환경·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·처리에 관한 자료		

처리 절차

